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
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6
----------	-----

2021. 11. 23.(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3일

-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세동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단순 인용 조항 변경
-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5건

* 「지방자치법」 각 인용 조항 변경,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령 변경(19세→18세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○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,

제1조(「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21조제1항”으로, “19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6조(「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”로 한다.

제9조(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2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부터 제129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26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56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- 제57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”를 “법 제128조”로 한다.
- 제60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”를 “법 제128조”로 한다.
- 제63조제1항 중 “법 제116조”를 “법 제129조”로 한다.
- 제13조(「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1호가목 중 “같은 법 제4조의2제4항”을 “같은 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- 제14조(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”로 한다.
- 제15조(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- 제16조(「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- 제17조(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- 제18조(「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- 제19조(「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- 제20조(「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”로 한다.
- 제21조(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2조(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)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8조”로 한다.

제24조(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로 한다.

제25(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로 한다.

-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단순한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
-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하는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 단순개정이 필요한 사항 25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21조제1항”으로, “19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로 한다.
제6조(「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”로 한다.

제9조(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2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
조부터 제129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26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56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”를 “법 제128조”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”를 “법 제128조”로 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법 제116조”를 “법 제129조”로 한다.

제13조(「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같은 법 제4조의2제4항”을 “같은 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”로 한다.

제15조(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6조(「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17조(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9조(「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노동자종합
복지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환경
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2조(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)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
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2
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
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8조”로 한다.

제24조(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
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로 다
제25(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치
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감사청구 주민 수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 수) 「지방자치법」----- 제21조제1항----- ----- 18세 ----- -----

2.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가.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</p> <p>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</p> <p>다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</p> <p>2. ·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현행과 같음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3.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성별영향평가의 시기) 3.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: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</p>	<p>제8조(성별영향평가의 시기) 3. 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----- -----</p>

4.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5.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8. “기금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8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6.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의 ----- ----- ----- -----

7.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(중략) 1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	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(중략)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의 --- ----- -----

8.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9.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④·⑤ (생략)	제3조(구성)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5항 -- ----- ④·⑤ (생략)

제22조(설치) ① 법 제11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26조(설치) ① 법 제113조 및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29조(설치) ① 법 제113조 및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3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(이하 "도로관리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22조(설치) ① 법 제126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설치) ① 법 제126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설치) ① 법 제126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,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(이하 "산림환경연구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40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, 가축 질병의 방역과 검정,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(이하 "동물위생시험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4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잡종의 생산·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(이하 "농산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47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(이하 "청남대관리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7조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생략)

제5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(이하 "내수면산업연구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서울세종본부(이하 "본부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(이하 "북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60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(이하 "남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27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설치) ① 법 제128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설치) ① 법 제128조-----

-----.

14.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3조(행정정보의 제공)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,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	제13조(행정정보의 제공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54조</u> ----- ----- -----

15.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5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6.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44조</u> 및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61조</u> -----

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3에 따라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7.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 17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8.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)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	제7조(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)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9.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20.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,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21.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22.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예산)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45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.	제15조(예산) ①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	② 현행과 같음

제17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	제17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23.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·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·제29조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8조----- ----- ----- -----.

24.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에 따라 건	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----- -----

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 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25.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「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」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 있 게 발전 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